

2011. 9. 19. 제17차 전원위원회 의결
(2011. 9. 15. 상임위원회 심의)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2012년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제1장. 인권증진계획의 개요	1
1. 수립배경	1
2. 추진경과	1
3. 인권증진계획의 체계 및 정의	2
제2장. 인권 환경의 변화와 추진방향	5
1. 인권 환경의 변화	5
2. 추진 방향	9
제3장. 인권증진3개년계획	11
1. 총론	11
2. 주요 특징	12
3. 체계도	14
4. 전략목표	21
· 전략목표Ⅰ.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21
· 전략목표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28
· 전략목표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35
· 전략목표Ⅳ.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39
· 전략목표Ⅴ. 차별시정 강화	43
· 특별사업(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50
· 기획사업1.(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52
· 기획사업2.(정보인권 증진)	53

제4장.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55
1. 추진 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역량강화’	55
2. 추진 절차	60
 [부록 1] 인권증진계획추진단 명단	61
[부록 2] 제1기 및 제2기 인권증진계획 체계도	62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제1장. 인권증진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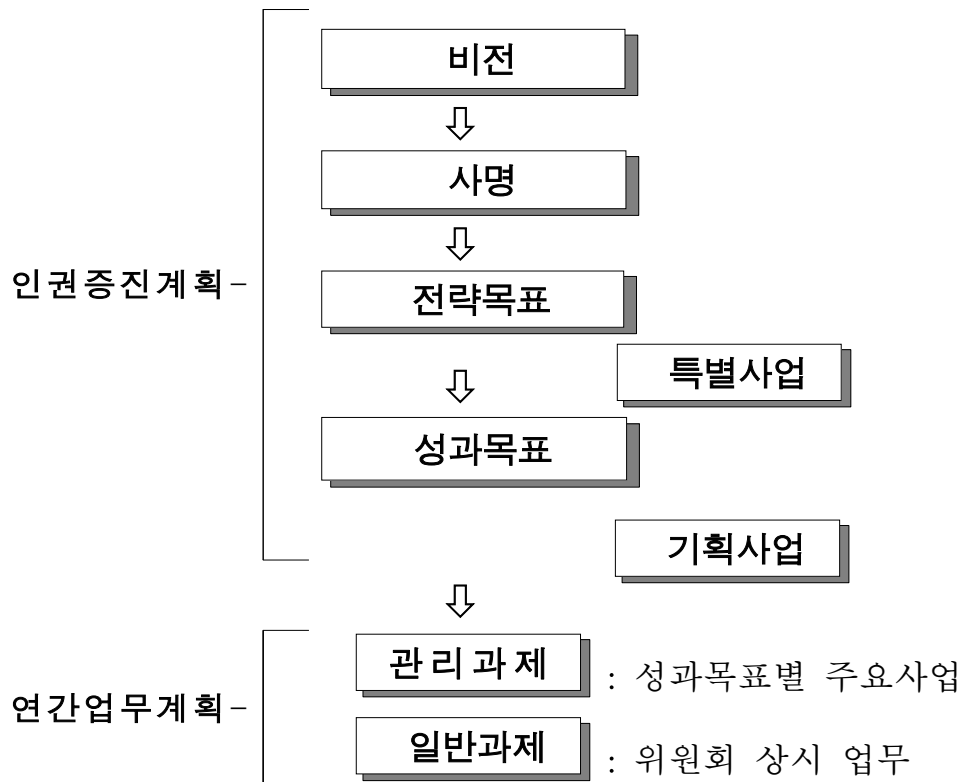
- 위원회는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수행할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마련하여 왔으며, 제1기(2006년~2008년)에 이어 제2기(2009년~2011년) 중기업무계획이 완료(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 및 차기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 차기계획 작성시 국내·외 인권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과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극복하기 위한 업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2. 추진 경과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구성
 -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인권위원 2명, 외부자문위원 6명 및 사무처 직원 11명, 간사2명으로 추진단을 구성, 활동 수행
 - 계획안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사무처 직원 및 간사로 실무추진단 운영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전체회의 : 4차(실무추진단 회의 : 5차)
- 국민참여 의견요청
 - 홈페이지 게시, 전자메일 발송(1차 33,000명, 2차 29,000명 및 230개 단체)
- 기타
 - 위원회 간부 토론회 2회, 실무담당과 의견 수렴, 인권정책자문위원회 설명회 및 의견청취 등

3. 인권증진계획의 체계 및 정의

□ 단계별 체계 구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권위 역량강화)

- 위원회 독립성 강화
- 국내외 협력 강화
-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체계 정의

○ 비전(Vision)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 사명(Mission)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위해 헌신할 임무

○ 전략목표

- 비전과 사명을 구현하고 3년 동안 추구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를 둠

○ 성과목표

-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목표로서 구체적 행동방향을 나타내는 “성과목표”를 둠

○ 특별사업

- 전략목표 정도의 비중을 갖지만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기획사업

- 성과목표와 동일한 단계이지만, 특정 의제에 관한 시대요청,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인권意識의 확산 또는 특정대상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는 사업(3개년 계획기간의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

○ 관리과제

- 각 부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목표의 주요 내용 중에서도 다음 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며, 구체적 사업 목표가 관리과제임

○ 일반과제

- 관리과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위원회 업무 중 그 성격이 기본적 업무영역에 속하거나 반복·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진정사건 처리, 인사·예산·조직 등 일반행정업무, 인권위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인권위 역량강화)

- 추진체계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위의 역량을 강화(독립성 강화, 국내외 협력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 인권증진중기계획(안)상의 선정된 목표와 과제는 업무의 중요성 여부에 따른 고려보다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업무영역도 연도별 단위업무계획으로 수립·시행

제2장. 인권 환경의 변화와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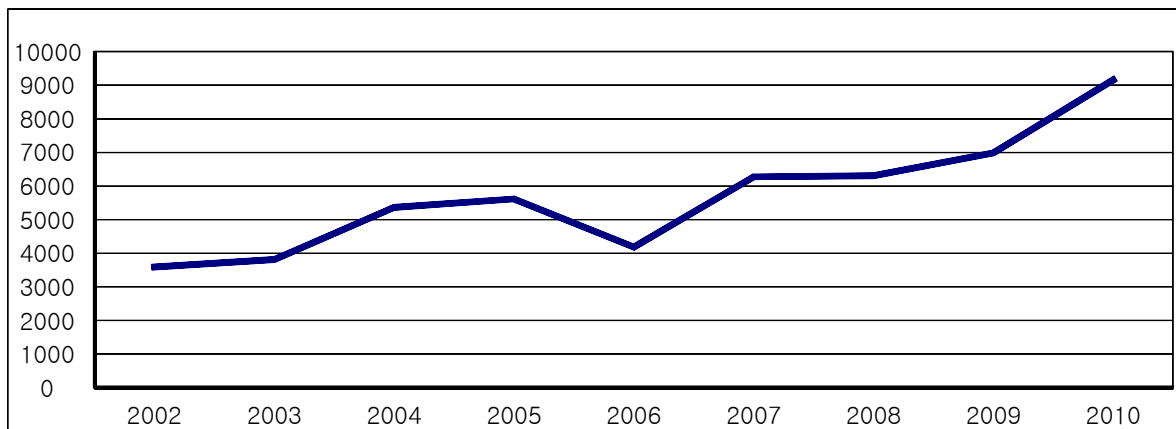
1. 인권 환경의 변화

□ 진정사건의 증가 추세

- 2001. 11. 25. 위원회 설립이후 진정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의 진정접수 건수는 2002년도 대비 2.5배 증가하였음.
- 이는 인권위에 대한 기대감 및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진정사건의 연도별 접수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접수 건수	3,593	3,815	5,368	5,617	4,187	6,274	6,309	6,985	9,158	51,306



□ 위원회의 조직 축소 및 정원 감축

- 2009. 4. 6. 조직이 축소되고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

하는 인권 현안에 즉각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인권에 관한 종합 전담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음

<조직개편 전·후 현황>

구분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감축
조직	5본부 22팀 (4소속기관)	3국 11과 (3소속기관)	△ 2국 11과 (1소속기관)
정원	208명	164명	△ 44명(21.1%)

□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진정사건이 증가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 적극적 역할과 기능을 다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인권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외에도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북한인권법 등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인권관련 법률의 제·개정 현황>

법률	제·개정일	시행일	비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1. 6. 7.	2012. 6. 8.	인권교육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2011. 3. 29.	2011. 9. 30.	
정신보건법(개정)	2010. 1. 18.	2010. 3. 19.	인권교육 의무화
연령차별금지법	2008. 3. 21.	2009. 3. 22.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 4. 10.	2008. 4. 11.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 마련

- 인권전담의 부서(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를 두거나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면서, 주민자치 생활영역에서 인권친화적 문화형성 도모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현황>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 조례	2009. 11. 16. (전부개정)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	2010. 3. 25.
전라북도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0. 7. 9.
해운대구(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조례	2010. 11.22.
수영구(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조례	2010. 12. 15.
북구(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 1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2010. 10. 5.

※ 장애, 이주민 등 개별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세

- 201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261,41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를 넘어서고 있으며, 통계청은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이주민으로 구성될 것이며, 2050년에는 9.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 인권의 국제 규범화 심화

-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점차 국제규범화, 국제기구화 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규범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해 짐

<국제인권기구>

- 정부간 국제기구 : 유엔 인권이사회(OHCHR), 아셈(ASEM)¹⁾ 등
- 비정부간 국제기구 : 국제엠네스티, Human Rights Watch 등
- 국가인권기구 :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²⁾,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 포럼(APF)³⁾ 회원기구 등 100여개 국가인권기구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⁴⁾ 제도 도입이후 국가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7개 인권조약⁵⁾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유엔의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및 이행지침」⁶⁾,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 인권원칙⁷⁾, ISO26000⁸⁾,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지침⁹⁾ 등 기업의 인

1) 아시아-유럽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2)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3)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4)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 유엔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정례 검토하는 활동

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여성에 대한 모등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Rights of the Child, CRU),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CRPD), 참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미가입)

6) 2011. 6. 유엔인권이사회 승인,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표준(내용 :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국가는 기업의 인권존중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제공하여야 함,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피해의 경우 구제책을 보장함)

7)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권경영을 위한 다양한 국제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 ※ 2005년 9월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 도입
- ※ 유엔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및 공무원,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2015년까지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추진 방향

□ 인권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지지 확대노력
-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사회권 증진 노력, 차별시정, 계층·세대간 및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 국민통합적 인권의제 개발
- 국제사회의 인권보호기능 강화 추세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능동적 역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7대 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사회의 관심분야인 ‘기업과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노력을 기울임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8)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2010.11.1. 사회적책임에 대한표준으로 ISO26000을 제정하였다. ISO26000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다른 모든 조직들도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와 이들 조직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으로 명명했다.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핵심주제는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사업관행, 소비자 쟁점,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 9) 1976년 처음 채택되어 여섯 번의 개정을 거쳐 고용, 인권, 환경, 소비자 등 9개영역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임

- 사회, 경제적 약자의 증가 및 국제사회의 요구 등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기반구축, 콘텐츠 개발등의 노력 필요

□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화 기반구축 노력

-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북한인권법 등 향후 추진되는 인권친화적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제도화 된 법률의 이행 점검, NAP에 대한 점검 및 UPR에 대한 이행점검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상시적 점검 필요
- 다문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인주인권 보호 기능 강화
- 정보인권에 관한 종합적 접근 필요(이미 2011. 3. 29.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 2011. 9. 30. 시행)
- 인권시민단체 및 국가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 미흡에 따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역량 강화

- 2009년 조직축소 이후 직권조사에 역량을 투입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조사기법의 개발, 신속한 처리, 합리적 제도 개선 등 권리구제를 위한 역량강화 및 직권조사·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기능 강화 필요

<직권조사 현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9	5	17	3	3

제3장. 인권증진3개년계획

1. 총론

☐ 명칭

- 2012년부터 2014년 까지의 인권증진계획의 명칭을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이하 “인권증진계획”으로 함)으로 함

☐ 비전(Vision)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 사명(Mission)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임무에 헌신함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 전략목표

-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 V. 차별 시정 강화
- ※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 기획사업 :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2. 주요 특징

□ 비전의 유지, 사명의 변경

- 제1기 및 제2의 비전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유지하고, 사명을 새로이 정함

□ 단계별 체계구성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인권증진3개년계획(비전→사명→전략목표→성과목표)⇒연간업무계획(관리과제, 일반과제)과 인권위 역량강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제로 구성됨

□ 전략목표, 성과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의 수립

- 5대 전략목표, 23개 성과목표, 1개 특별사업 및 2개 기획사업을 수립함

□ 전략목표의 특징

- 2기의 전략목표는 기능별 및 대상별로 혼재되었으나, 2기의 5대 전략목표는 기능별 전략목표로 일원화 함
- 5대 전략목표는
 - ①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를 통해 사회권 증진, 자유권 강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인권지수개발 등 인권 일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군인권 증진을 목표로 함
 - ②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를 통해 다문화 사회, 노인, 아동청소년 및 각종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③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 확대,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 ④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현재 세대 뿐만 아니

라 미래세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함

⑤ '차별시정 강화'를 통해 장애, 성, 연령, 학력, 소수자 및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을 개선함

- 북한인권은 3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의제임을 감안하여 특별사업으로 유지함
- 성과목표로 설정하여도 될 사업이지만 시대 및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정보인권 증진을 기획사업으로 선정함

☐ 성과목표별 주요내용의 유연화

- 주요내용을 예시함으로써 성과목표의 의미를 명백히 하고, 인권환경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여 매년 익년도 업무계획 작성시 방향을 제시함

3. 체계도

□ 체계도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전략 목표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 중문화 확산	V. 차별시정 강화
성과 목표	1. 사회권의 확대 · 증진 2. 자유권의 보장 · 강화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4. 군인권 증진과 병역 제도 개선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6. 인권지수 개발	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 2. 노인인권 향상 3. 아동 · 청소년 인권향상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1. 기획조사 확대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1. 인권교육을 위한 제 도적 기반구축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 권친화적 문화 조성	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 2. 성차별 시정 강화 3. 연령 ·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소수자 인권 향상 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 사업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2. 정보인권 증진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인권위 역량강화) : 1. 인권위 독립성 강화, 2.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3.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성과목표별 주요 내용(도표)

전략 목표	성 과 목 표	주요내용
기 본 적 인 권 의 제 도 적 보 장 강 화 (1)	1. 사회권의 확대·증진	사회권확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모색 - 환경·주거·노동·건강·교육·안전·정보접근권 등에서의 사회권 발굴 - 사회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현 방안 모색
		빈곤계층인권 증진(주거권, 건강권 등) - 철거민, 노숙자, 쪽방촌 주민, 1인 취약가구, 최저주거기준 이하 생활자 등의 인권 증진 방안 강구 - 빈곤계층의 건강권(의료권) 보장 -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시설의 최소 공급 기준 등 인권증진방안 마련
		노동취약계층(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인권 증진 - 비정규직 노동자·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2. 자유권의 보장·강화	생명권 및 생명윤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판단기준 마련 - 안락사, 배아복제, 유전자 정보관리 등
		자살원인의 조사·연구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 - 자살예방법 제정에 따른 생명권 존중 프로그램 마련 -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보장 강화 - 유형별 표현의 자유의 보장 강화 - 기본적 자유권의 보장강화를 위한 제도적 모색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모색 -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피의자·피고인 및 참고인의 인권보호 -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보장 강화(여성·아동·장애인 등 보호조치, 국가보상제도 실질화)
	3. 국 제 인 권 기 준 의 국내이행 강화	다양한 형태의 폭력 예방 강화(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폭력예방 등) -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강화 - 조약이행을 위한 정부 보고서안 검토 및 조약기구권고안 이행 모니터링 - 미가입 인권조약(선택의정서 포함) 가입 검토, 유보조항 검토 - 사법기관의 국제기준 국내적용 제고
		UPR이행 모니터링 및 인권기준의 정착 방안 모색 - 2008년 UPR 권고 이행 검토 및 2012년 UPR 한국 심사관련 관계기관 협력
	4. 군인권 증진과 병역 제도 개선	군복무자의 기본적 생활인권 및 병역제도 개선 등 방안 검토 - 군복무자·군가족의 건강, 교육권 등 인권증진 방안 검토 - 군 부적응자 인권증진, 대체복무제 등 제도개선 모색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
		여군의 임신, 출산, 육아, 근무환경, 처우 등 차별개선 및 인권증진 모색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 구축	인권친화적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기반 구축 - 차별금지법, 여성차별철폐법(양성평등법, 여성동등처우법), 학력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등 제정 노력 강구
		인권NAP 권고에 따른 모니터링 및 정책협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개선 및 확산(조례표준안 보급 등)
	6. 인권지수 개발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 국내 문헌, 국제기준, 각국 사례 등 연구
		영역별, 분야별 인권지표 방향 설정 및 개발추진
	사 회 적 약 자 의 인 권 보 호 확 대 (Ⅱ)	1. 다문화 사회의 이주 민 인권 증진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 기반 구축 - 종합적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정책·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고 - 국제인권기준의 연구 및 국내이행 강화 - 인종주의, 인종적 편견, 차별 방지를 위한 언론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이주 가족의 인권 증진 - 이주 가정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홍보 등)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아동(가족해체 아동 포함)에 대한 인권증진(차별해소, 의료권, 교육권 등) - 중도입국 자녀의 실태파악 및 사회적응 방안 제시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마련 및 사회복지지원 증진 방안 모색 - 농·어업 이주노동자 및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방문조사 지속) - 선진국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실태 파악 및 국내 적용
		난민 인권증진 - 난민인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및 사회인식 개선(교육, 홍보 등) -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및 가족의 안정적 체류 지원 방안(사회보장체계, 건강권 등) -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강화(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2. 노인 인권향상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 노인인권 가이드 라인 마련 - 최저생활보장권, 자립생활, 사회참여, 건강권 등 강구 - 노인자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인권개선
		독거노인, 빈곤노인 등 취약노인의 인권증진 방안 모색 - 사회복지 지원방안 모색,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 강화
		3.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
		인권취약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안전·건강권, 대안양육 등) - 영유아기 아동·비학생 아동·청소년, 소년범,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아동 등 가정폭력·학대·성폭력(성매매)·인신매매·저임금 등으로 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강화 - 학대 아동 보호 전문 인프라,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모색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사생활의 자유, 참여권, 체벌 등) 강화 및 아동의 의견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등
		4. 시설생활인의 인권 보장
		시설분야별 인권보호체계 구축 - 노인,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인권친화적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등 - 장애인시설, 정신보건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방안 마련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정책 방안 강구
		유형별 미인가 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

		방문조사의 체계적 실시 - 단발성, 행사성 방문조사를 지양하기 위한 단계적, 종합적 접근 방안 모색
조 사 · 구 제 의 실 효 성 제 고 (Ⅲ)	1. 기획조사 확대	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합리화 방안 마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진정사건 처리의 체계화, 매뉴얼 개발 - 조사 관련 법률적 쟁점 분석 정리
		진정인의 만족도 고양을 위한 분쟁해결 모델 개발
		권고 등의 이행을 위한 관계자·기관, 단체 등 협력 체계화
	3. 인권상담 서비스 만 족도 제고	상담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기법 개발
		인권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상담 활성화
		인권상담을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4 지역주민의 인권접 근성 증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인권의제의 발굴·운영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지역주민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위원회 전략과제의 지역적 실현(장애, 이주, 노인 등)
인 권 교 육 을 통 한 인 권 존 중 문 화 확 산 (Ⅳ)	1. 인권교육을 위한 제 도적 기반 구축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 인권교육법 및 인권조례 제정 촉진 등을 통한 인권교육 실행 법적기반 구축 - 인권교육원 설립을 통한 인권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인권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총괄·조정기능 수행 -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도 개선의 권고기능 활성화를 통해 인 권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유엔 인권교육 훈련선언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마련 및 인권교육모델 개발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성장단계별 인권교육체계 마련 - 보육시설·유치원 인권교육도입 등 평생교육과정으로서 단계별 인권교육 방안 마련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이행 - 공무원, 검찰, 경찰, 군인 대상 인권교육 강화(인권교육과정 상설화 및 강사양성과 정 운영을 통한 전문강사인력 양성) - 인권과목 개설 등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 강화 - 초·중등 교육에서 교육과정 개정 및 인권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공공영역에서 인권교육 확산 - 세계인권교육이행 대상을 제외한 공공영역(입법공무원, 지방의원, 판사, 법원공무 원 등)에서의 인권교육 과정 개설

차 별 시 정 강 화 (V)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	민간영역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확산 - 기업 및 언론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과정 개설 - 시설 종사자 등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교육대상별(유·초·중·고·대학, 군인, 경찰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인권강의 교안의 매뉴얼화
		신기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인권교육 접근성 강화 - 온라인,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공 - 방송, 언론 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인권교육 확대 및 강화
		예술·문학 등을 활용한 인권교육의 대중화 - 예술·문학작품을 통한 인권이해 도서 발간·보급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홍보)
	1. 장애인 차별 시정 강화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행 법제도 및 정책 분석 후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각 영역별 새로운 인권적 요구와 선진 외국사례와의 비교 연구 -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차별 시정과의 연동 시스템 개발 - 장애차별 영역별·유형별 중장기 개선 계획과 연차별 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실적·효과적 지원 모델 개발 및 제안 - 주거·활동 보조·소득·생계·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립생활 정책 마련 - 장애유형별 효과적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 작성
		장애인 차별 및 편견 해소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 - 장애차별 관련 토론회, 캠페인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 이행 제고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의무교육 실시 현황과 편의제공 보장 강화 방안 연구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운영 실질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장애유형별 욕구에 부합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자(발달장애인 중심)의 교육권 실태조사, 제도 개선 연구
	2 성차별 시정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장 증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비혼모 등 인권개선 방안 마련 - 가사노동·돌봄고용 등의 인권개선 방안 마련 - 성매매·유사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여성의 자활 등 방안 마련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노동인권 개선 - 여성 고용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 강구 - 여성 특정직 공무원의 고용환경 실태파악 및 차별개선 - 모집·채용에서 차별 개선방안 마련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의 구제 및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공직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정치분야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및 권고(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검토) - 여성대표성 관련 적극적조치의 효과와 개선방안 마련 - 공직에서 양성평등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모집·채용과정상의 연령 및 학력 차별 관행 개선 - 기업 채용과정상의 차별 관행 모니터링 - 기업 채용과정상의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및 기획홍보 강화
		정년 관련 차별시정을 위한 방안 마련 -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 -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분 정년 차등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일상생활의 주요 차별 직권조사 실시 - 진정사건 경향, 언론보도 등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주요차별 사안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성희롱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의 성희롱 처리 지침 중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 성희롱 발생 기관, 피해자 및 행위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방안 마련
		사회지도층 등 사회 영향력이 강한 집단의 성희롱 예방 방안 마련 - 집단 내부 구성원의 행동지침 등 마련 지원 - 전문 직능 분야 별 직무교육에 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하는 등 방안 제시
	5. 소수자 인권향상	병력자에 대한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 희귀질환자, 한센인, HIV/AIDS감염인, B형 간염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소수자 차별시정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 병력 차별 관련 인식 전환 캠페인 - 반차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상별 대국민 캠페인
	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공직수행, 교육시설이용, 채용 등에서의 종교강요·제한 등 차별 개선
		종교차별 시정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3대 인권현안(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인권개선
기획 사업	기업경영의 인권 문화 확산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국내 공감대 형성
		주요기업과 MOU 체결을 통한 인권경영 활동지원
		국제협력활동 강화(ICC 위킹그룹활동 등)
	정보인권 증진	정보인권 종합보고서 발행 및 이행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기준마련 등
		인권친화적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4.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주요내용은 성과목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예시이므로 매년 작성하는 업무계획을 통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함

전략목표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	-------------------------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의 기준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임. 그럼에도 우리의 제도, 관행 및 법령은 헌법 또는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인권에 관한 기준정립, 실질적 제도보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한편, 잘못된 군병영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군복무자의 전반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성과목표

- I-1. 사회권의 확대·증진
- I-2. 자유권의 보장·강화
- I-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 I-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 I-5. 차별금지법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 구축
- I-6. 인권지수 개발

□ 추진 방향

- 사회권은 자유권과 더불어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영역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임
- 그동안 사회보장권을 비롯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왔고, 특히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왔음
- 하지만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회권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기준에 비할 때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며, 현행 제도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빈곤계층, 노동취약계층 등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라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의 전반적인 인권증진이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권 보장 의무가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음

□ 주요 내용

- 사회권확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모색
 - 환경·주거·노동·건강·교육·안전, 정보접근권 등에서의 사회권 발굴
 - 사회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현 방안 모색
- 빈곤계층 인권 증진(주거권, 건강권 등)
 - 철거민, 노숙자, 쪽방촌 주민, 1인 취약가구, 최저주거기준 이하 생활자 등의 인권 증진
 - 빈곤계층의 건강권(의료권) 보장
 -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시설의 최소 공급 기준 등 인권증진 방안 마련
- 노동취약계층(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인권 증진
 - 비정규직 노동자·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 추진 방향

- 생명과학기술에 의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4.1.29.제정, 2005.1.1.시행)이 제정되었으나, 생명윤리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3.31.제정, 2012.3.31.시행)이 제정되었음에도 생명존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단편적인 조치로 자살예방을 해결하기보다, 자살예방을 위한 원인분석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이고, 심도있는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 위원회에 접수되는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대상 진정사건의 많은 부분이 수사절차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사 및 재판에서 인권 보장은 중요한 사안임. 특히 수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명권 침해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빈번한 인권침해 유형 및 심각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인권 보장을 위한 우선 과제임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유보조항 철회 검토,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규정 범죄 축소(인권위는 2005. 4.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축소,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한 즉각적 절차 시행 등을 권고하였으나, 아직 우리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과 제도적 유산이 남아 있고, 자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으며,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국내에 이행하는 데 미흡함
-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생명권 및 생명윤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판단기준 마련
 - 안락사, 배아복제, 유전자 정보관리 등
- 자살원인의 조사·연구, 자살예방 활동 강화

- 자살예방법 제정에 따른 생명권 존중 프로그램 마련
-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보장 강화
 - 유형별 표현의 자유의 보장 강화
 - 기본적 자유권의 보장강화를 위한 제도적 모색
-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모색
 -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피의자·피고인 및 참고인의 인권보호
 -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보장 강화(여성·아동·장애인 등 보호조치, 국가보상제도 실질화)
- 다양한 형태의 폭력 예방 강화(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의 폭력예방)
 -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성과목표 I-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 추진 방향

- 현재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멤버로서 활동 중이면서 주요 유엔인권조약 9개중 7개의 조약에 가입하였으므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은 국제적 의무임과 동시에 국내인권정책의 기본방향임. 그러나, 가입한 조약의 경우도 일부 유보조항을 남겨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실정임.
- UPR 권고안에 따라 해당 정부기관이 인권보호 및 신장의 실행의지 및 물적·인적 기반을 구체화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위원회 역할 강화 요청에 따라 교류협력을 통한 역량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내외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임.

□ 주요 내용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강화
 - 조약이행을 위한 정부부고서안 검토 및 조약기구권고안 이행 모니터링
 - 미가입 인권조약(선택의정서 포함) 가입 검토, 유보조항 검토
 - 사법기관의 국제기준 국내적용 제고
- UPR이행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협력
 - 2008년 UPR 권고 이행 검토 및 2012년 UPR 한국 심사관련 관계기관 협력

성과목표 I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 추진 방향

- 불합리한 관행과 하급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병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내 자살, 총기난사, 투서 등 각종 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모병단계에서 사회복귀까지의 병역제도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기본적 생활인권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나, 군복무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한편, 여성의 군복무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군의 임신, 출산, 육아, 근무환경, 처우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한 인권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주요 내용

- 병역제도 개선, 군복무자의 기본적 생활인권 등 개선 방안 검토
 - 군복무자·군가족의 건강, 교육권 등 인권증진 방안 검토
 - 군 부적응자 인권증진, 대체복무제 등 제도 개선 모색
- 군대내 폭행,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
- 여군의 임신, 출산, 육아, 근무환경, 처우 등 차별개선 및 인권증진 모색

□ 추진 방향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 8. 협약이행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2년 안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¹⁰⁾한 바 있음
- 인권위는 2006. 7. 27.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07. 5.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의견표명한 바 있으나, 이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되었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사유별 개별법의 제정 노력이 필요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의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함
- 2006. 2. 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2007년~2011년 5개년 계획)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2012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행될 예정으로 권고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인권조례 제정의 주체인 지방의회의 소극적 자세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추진역량을 배가하기 위하여 인권조례표준안을 보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동기를 부여함

□ 주요 내용

- 인권친화적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기반 구축
 - 차별금지법, 여성차별철폐법(양성평등법, 여성동등처우법), 학력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등 제정 노력
- 인권NAP 권고에 따른 모니터링 및 정책협의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개선 및 확산(조례표준안 보급 등)

10) 한겨레신문, 2011. 8. 10. 수요일, 12면

□ 추진 방향

- 우리나라의 인권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인권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인권지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 국회는 인권위가 인권지수를 산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0. 7. 23.)을 발의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수, 지수 영역, 지수 틀 등에 대한 기초 연구, 기반구축 및 개발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 국내 문헌, 국제기준, 각국 사례 등 연구
- 영역별, 분야별 인권지표 방향 설정 및 개발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금번 중기계획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노인, 아동·청소년 및 각종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생활인을 사회적 약자의 대상으로 하였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개선 및 의식의 변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은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출산율 저하¹¹⁾, 평균수명 연장 등의 원인으로 우리사회의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부모봉양 전통이 퇴색됨에 따라 노인문제를 개인적,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함
- 아동은 올바른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1991. 11. 20.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하면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기, 초등학생기, 청소년기 등 발달단계에 따른 인권보장을 위한 접근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생활인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성과목표

- II-1.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인권 증진
- II-2. 노인인권 향상
- II-3.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
- II-4.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강화

11) 세계각국의 출산율 “2009 세계인구 현황보고서 “, 유엔인구기금(UNFPA)

구분	세계평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출산율	2.54	2.08	1.88	1.85	1.32	1.26	1.22

□ 추진 방향

-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그들의 자녀, 난민 등 장기 거주 목적의 외국인이 2010. 12월 말 기준으로 126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 정착 이주민 중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 이주민 비율이 높고, 체류 외국인중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들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을 총괄 부서로 지정하여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12)’ 및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 가족의 국내 안정적 체류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다문화 가족의 범주를 결혼이민자 가족에 한정하여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간의 결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은 그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이에 따라 다문화 정책의 종합적 접근,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위해 인권위의 역량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 기반 구축
 - 종합적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정책·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고
 - 국제인권기준의 연구 및 국내이행 강화
 - 인종주의, 인종적 편견, 차별 방지를 위한 언론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이주 가족의 인권 증진 도모
 - 이주 가정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홍보 등)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아동(가족해체 아동 포함)에 대한 인권증진(차별해소, 의료권, 교육권 강화 등)
 - 중도입국 자녀의 실태파악 및 사회적응 방안 제시

○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도모

-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마련 및 사회복지 지원 증진 방안 모색
- 농·어업 이주노동자 및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방문조사 지속)
- 선진국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실태 파악 및 국내 적용

○ 난민 인권증진 도모

- 난민인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및 사회인식 개선(교육, 홍보 등)
-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및 가족의 안정적 체류 지원 방안(사회보장체계, 건강권 등)
-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강화(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성과목표Ⅱ-2

노인 인권향상

□ 추진 방향

-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35만7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48,219천명으로 약 11%에 해당하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¹²⁾.
- 또한,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 노인문제를 주로 사회적 부담 증가와 노동인력 감소라는 경제적 효용문제로만 보는 시혜적 근시안적 관점을 인권적(독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관점으로 전환하고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인식 개선 확산이 요청됨

□ 주요 내용

-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 노인인권 가이드 라인 마련

12)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권지표’ 참조

- 최저생활보장권, 자립생활, 사회참여, 건강권 등 강구
- 노인자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인권개선
- 독거노인, 빈곤노인 등 취약노인의 인권증진 방안 모색
- 사회복지 지원방안 모색, 노동권 및 건강권 등 보장 강화

성과목표Ⅱ-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 추진 방향

-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나 사회의 관심이나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인권취약 분야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은 18세미만의 자임
-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아동은 미성숙한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여전하여 두발이나 복장 규제, 체벌, 정치활동 금지 등 사생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됨
- 또한 아동인권 분야에 있어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강권 등의 분야와 아동학대 등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인권취약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안전·건강권, 대안양육 등)
 - 영유아기 아동, 비학생 아동·청소년, 소년범,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아동 등
- 가정폭력·학대·성폭력(성매매)·인신매매·저임금 등으로 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강화
 - 학대 아동 보호 전문 인프라,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모색
-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학생인권조례, 사생활의 자유, 참여권, 체벌 등) 강화

□ 추진 방향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다수인보호시설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나, 각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미인가 시설도 많이 있어서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왔음
- 또한 각 시설별 주무부처 및 관련법령이 개별적으로 입법화 되어 있어서 시설생활인의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위원회의 조사권한인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예방적, 실질적 구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참고 : <법률에 의한 각종 생활시설>

법률	시설	시설의 종류(법정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아동복지법	아동 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자립 지원시설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상담소 아동 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경로관 -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단기 보호시설 장기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갱생보호를 위한 시설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모자보고시설 - 모자자립시설 - 부자보호시설 - 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자시설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 모자 공동생활가정 - 부자 공동생활가정 -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 어린이집

□ 주요 내용

- 시설분야별 인권보호체계 구축
 - 아동, 노인,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인권친화적 운영가이드 라인 마련 등
 - 장애인시설, 정신보건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방안 마련
-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 정책 방안 강구
- 유형별 미인가 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
- 방문조사의 체계적 실시
 - 단발성, 행사성 방문조사를 지양하기 위한 단계적, 종합적 접근 방안 모색

전략목표 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	---------------------

□ 배경 및 필요성

- 위원회의 권리구제는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시정하고, 국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매우 중요함
- 또한, 국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적합한 구제방법을 통한 권리구제가 요구됨
- 특히, 기획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찾아가는 인권상담 및 인권접근성 제고를 통해 질 높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성과목표

- Ⅲ-1. 기획조사 확대
- Ⅲ-2. 조사구제 실효성 강화
- Ⅲ-3. 인권상담 서비스 만족도 제고
- Ⅲ-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성과목표Ⅲ-1	기획조사 확대
----------------	----------------

□ 추진 방향

- 개별진정사건 조사만으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핵심 문제가 파악된 분야는 기획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되는 관행, 정책, 법, 제도, 의식,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합리화 방안 마련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 모든 생활 영역별에서의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성과목표Ⅲ-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 추진 방향

- 국민들은 우리 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차별의 구제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권리구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차별 유형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구제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실효성 있는 인권 침해 및 차별 예방과 구제, 사회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조사기법 개선, 조사역량 강화, 권리구제 방법 등의 개발은 필수적임

□ 주요 내용

-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진정사건 처리의 체계화, 매뉴얼 개발
 - 조사 관련 법률적 쟁점 분석 정리
- 진정인의 만족도 고양을 위한 분쟁해결 모델 개발
- 권고 등의 이행을 위한 관계자·기관, 단체 등 협력 체계화

□ 추진 방향

- 인권상담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적절한 구제방법을 안내해 왔으며, 위원회는 면전진정 등을 통해 폐쇄된 시설 등에도 접근하여 인권취약집단의 인권상황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옴
- 그럼에도 여전히 접근성이 취약한 국민들이 존재하고, 인권침해와 차별 유형이 다양화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상담 기능과 역할의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출범 이후 정보인권 등 새로운 인권영역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 등으로 진정, 민원,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취약한 국민들이 존재하고, 인권침해와 차별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상담시스템의 개선 및 활동 영역의 다변화 등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상담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기법 개발
- 인권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상담 활성화
- 인권상담을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 추진 방향

- 진정사건 처리, 면전진정 처리, 긴급한 인권현안 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위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는 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3개 지역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신속한 면전진정 접수 및 진정사건 처리,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적시성 있는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는 여전히 위원회의 주요과제로 요청되고 있음.
-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더불어 장애, 아동, 노인, 이주민, 여성 등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지역사회에 특성에 맞는 인권의제의 발굴·운영
-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 지역주민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 위원회 전략과제의 지역적 실현(장애, 이주, 노인 등)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14)에서는 초·중·등 교육체계에서의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아울러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인 및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해병대 총기사건, 전의경 구타·사망사건, 경찰서 피의자의 고문사건,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의 사건사고의 근본원인은 인권 존중의식 부재에 있음. 또한 외국인,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으로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
- 따라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보다는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함.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구축 아래 교육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성과목표

- IV-1. 선진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IV-2. 인권교육의 강화 및 확산
- IV-3. 인권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성과목표IV-1**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추진 방향**

-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등 각종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외 협력 체계 마련과 국내 인권교육의 정책·제도의 개선기능의 활성화 필요함

-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기업, 언론 등 사회적 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업경영에서의 인권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아직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과 인권교육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 인권교육법 및 인권조례 제정 촉진 등을 통한 인권교육 실행 법적기반 구축
 - 인권교육원 설립을 통한 인권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인권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총괄·조정기능 수행
 -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도 개선의 권고기능 활성화를 통해 인권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유엔 인권교육 훈련선언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마련 및 인권교육모델 개발

성과목표IV-2

인권교육의 강화 및 확산

□ 추진 방향

- UN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14)에서는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인 및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은 학령기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의 모든 교육과정, 즉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성장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공적, 사적 영역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서 사회 모든 공·사 조직에까지 인권교육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성장단계별 인권교육체계 마련
 - 보육시설·유치원 인권교육도입 등 평생교육과정으로서 단계별 인권교육 방안 마련
-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이행
 - 공무원, 검찰, 경찰, 군인 대상 인권교육 강화(인권교육과정 상설화 및 강사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강사인력 양성)
 - 인권과목 개설 등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 강화
 - 초·중등 교육에서 교육과정 개정 및 인권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 공공영역에서 인권교육 확산
 - 세계인권교육이행 대상을 제외한 공공영역(입법공무원, 지방의원, 판사, 법원공무원 등)에서의 인권교육 과정 개설
- 민간영역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확산
 - 기업 및 언론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과정 개설
 - 시설 종사자 등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성과목표IV-3

인권 콘텐츠의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 추진 방향

- 인권감수성 향상은 강의식 교육으로는 교육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참여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UCC 동영상 등 시청각 교육교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유엔인권교육 훈련선언에서도 인권교육의 수단으로 문화예술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우리 사회에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내리려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교육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교육대상별(유·초·중·고·대학, 군인, 경찰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인권강의 교안의 매뉴얼화
- 신기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인권교육 접근성 강화
 - 온라인,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공
 - 방송, 언론 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인권교육 확대 및 강화
- 예술·문학 등을 활용한 인권교육의 대중화
 - 예술·문학작품을 통한 인권이해 도서 발간·보급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홍보)

전략목표 V

차별 시정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위는 차별시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목표로 장애인, 여성, 소수자, 연령·학력에 의한 차별금지, 성희롱 예방활동 및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등으로 정하여 차별시정에 집중하고자 함
-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에 관한 시정기구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와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질적 개선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체계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연구와 함께 장애인의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치·경제 등 공적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취약한 가운데,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노동인권 개선이 긴요함. 이에 따라 여성인권 향상,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함.
- 노인의 경제활동 증가 및 청년층 실업증대 등으로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학력차별금지법의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차별금지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함
-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취약분야 소수자에 대한 배려, 잠정적 우대 조치 등을 통하여 인권영역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잠재적 우려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필요함
-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교에 의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임.

□ 성과목표

V-1. 장애인 차별시정 강화

V-2. 성차별 시정 강화

V-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V-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V-5. 소수자 인권향상

VI-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성과목표 V-1

장애인 차별시정 강화

□ 추진 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으며,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전인하기 위하여 정책적 업무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위원회와 정부, 장애 당사자의 노력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장애 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인권적 요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장애 관련 인권정책은 여전히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급급한 면이 있음
- 또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없이 시기마다 도출되는 사회적 의제를 따라감으로써 정부부처의 노력을 전인하지 못하고 단편적·파편적인 대응에 불과한 경향임
- 따라서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 문제 해결과 더불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보다 종합적·체계적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행 법제도 및 정책 분석 후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각 영역별 새로운 인권적 요구와 선진 외국사례와의 비교 연구
 -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차별시정과의 연동 시스템 개발

- 장애차별 영역별·유형별 중장기 개선 계획과 연차별 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실적·효과적 지원 모델 개발 및 제안
 - 주거·활동 보조·소득·생계·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립생활 정책 마련
 - 장애유형별 효과적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 작성
- 장애인 차별 및 편견 해소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
 - 장애차별 관련 토론회, 캠페인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 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 이행 제고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의무교육 실시 현황과 편의제공 보장 강화 방안 연구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운영 실질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장애유형별 욕구에 부합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자(발달장애인 중심)의 교육권 실태조사, 제도 개선 연구

성과목표V-2

성차별 시정 강화

□ 추진 방향

-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의하면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이 의사결정직 부문이었음¹³⁾

13) 참고 : 동아일보, 2011. 7. 14.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유리천장’ 시대 끝내자, 유럽기업들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서약 열풍”

<각 직군별 성평등 지표값>

(단위 : 완전성평등 = 100.0)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회의원	14.6	14.6	14.6	15.5	15.5	-
5급이상 공무원	19.8	20.4	22.7	23.7	25.2	-
국공립대 교수	11.0	11.7	12.1	12.2	12.8	13.2
정부위원회	32.4	33.7	33.1	30.9	28.0	21.7

- 2010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0,256천명(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4%¹⁴⁾)이나,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여성의 임금이 66.9%불과함. 특히, 여성노동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재진입이 어렵고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모성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의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한편 가사·간병·보육 등 ‘가사근로’ 및 ‘돌봄노동’의 경우, 2007년 종사자가 44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4만명이 증가하고 이중 97% 이상이 여성으로, 이들에 대한 낮은 보수, 불안정한 고용, 사회보장 및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임. 특히 2011. 6. 16. ILO 총회,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됨

□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장 증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비혼모 등 인권개선 방안 마련
 - 가사노동·돌봄고용 등의 인권개선 방안 마련
 - 성매매·유사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여성의 자활 등 방안 마련
-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노동인권 개선
 - 여성 고용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 강구
 - 여성 특정직 공무원의 고용환경 실태파악 및 차별개선
 - 모집·채용에서 차별 개선방안 마련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구제 및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14) OECD 가입국 평균 61.3%, 미국 69.0%, 일본 62.9%

-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정치분야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및 권고
 - 여성대표성 관련 적극적조치의 효과와 개선방안 마련
 - 공직에서 양성평등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성과목표V-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 개선

□ 추진 방향

- 연령차별금지법 제도와 단계 및 경제활동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
 -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3주년이 되는 2012년 이후 정년 규정을 포함한 연차법의 제도적 강화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속
 -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인 경제활동 증가 및 청년층 실업 증대에 따른 고용시장에서의 연령차별 양상 다양화
- 학력차별 금지 관련 법제화 움직임 및 학력 인플레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 대두
 - 2011. 9. 현재 정부 여당에서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9월 국회 환경노동위 공청회(예정)
 - 경력 취득 경로 다변화로 학력을 대체할 만한 능력 검증 시스템 다양화 됐으나 기존 관행 개선의 속도는 지체

□ 주요 내용

- 모집·채용과정상의 연령 및 학력 차별 관행 개선
 - 기업 채용과정상의 차별 관행 모니터링(2011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기업 채용과정상의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및 기획홍보 강화
- 정년 관련 차별 시정을 위한 방안 마련
 -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연구(2011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분 정년 차등 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 일상생활의 주요 차별 직권조사 실시
 - 진정사건 경향, 언론보도 등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주요차별 사안

□ 추진 방향

- 성희롱은 인권침해, 차별의 하나로서 업무환경,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발생시킴에도, 남성 중심의 직장생활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처리되어 피해자들에게 이중 피해를 초래함.
- 특히 성희롱 피해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소속 기관 등의 초기 조치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예상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함. 이에 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회의 성희롱 진정에 대한 결정례가 축적되고 사회 전반의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되면서 고용관계에서의 전형적인 성희롱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사제관계, 군대의 명령체계에서의 관계, 서비스 제공 및 이용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희롱이 증가하는 등 성희롱의 외연이 확대됨.
- 최근 국회의원, 교수, 교장, 의사, 기업 대표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의 성희롱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성희롱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의 성희롱 처리 지침 중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 성희롱 발생 기관, 피해자 및 행위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도적 방안 마련
- 사회지도층 등 사회 영향력이 강한 집단의 성희롱 예방 방안 마련
 - 집단 내부 구성원의 행동지침 등 마련 지원
 - 전문 직능 분야 별 직무교육에 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하는 등 방안 제시

성과목표V-5

소수자 인권향상

□ 추진 방향

-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소수자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한센인, HIV/AIDS감염자, 병력자, 성적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의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인권을 증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병력자에 대한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 희귀질환자, 한센인, HIV/AIDS감염인, B형 간염 등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 소수자 차별시정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 병력 차별 관련 인식 전환 캠페인
 - 반차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상별 대국민 캠페인

성과목표V-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 추진 방향

-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종교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종교에 의한 차별사례가 사회의 이슈가 되기도 함. 특히 공직수행자의 편향적 태도 또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이용관계에 있어서도 종교차별에 의하여 사회 문제화 하기도 하므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종교에 의한 차별개선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공직수행, 교육시설이용, 채용 등에서 종교강요·제한 등 차별 개선
- 종교차별 시정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배경 및 추진방향**

- 남과 북은 유엔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엔의 국제 규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근원에는 인류 보편의 인권이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준국제 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함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이후 적지 않는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고 있지만 이들은 무국적 유랑민 상태로 인해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신매매, 강제송환, 현지인과 결혼에 따른 무국적 아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정착과정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의 사회제도로 인한 이질감 및 차별적 인식 개선을 통해 통일이후 사회적 통합 가속화할 수함
- 남북분단과 6.25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3대 인권현안은 피해 당사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행복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급적임
- 관련 당사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3대 인권현안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의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인권전담 기구이며 준국제기구로 헌법 정신을 실현하도록 의무 지워진 인권위는 북한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다양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

□ **주요 사업**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 권리로서의 인권(자유권 및 사회권) 개선활동 강화
 - 북한의 자유권·사회권 관련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운영 활성화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홍보 강화
 - 북한주민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접근권 실현방안 강구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및 협력 방안 강구

○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 북한이탈주민의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연구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연구
- 하나원 등에서 생활밀착형 정착교육 프로그램 확대방안 강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활동 강화

○ 3대 인권현안(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인권개선

-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등 단계별 실천 방안 마련 등 인권적 접근 방안 강구
- 사회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활동 강화
- 남북한 가족이 재결합 과정에서 발생될 호적관계, 중혼문제, 상속문제 등을 해결할 법·제도 연구
-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관계 강화 등을 통한 국제여론 조성

□ 배경 및 추진방향

- 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영향력 증대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만연함에 따라 더 이상 기업에서의 인권 이슈는 회피할 수 없는 핵심적 문제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개정, ISO26000의 제정, GRI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 확산,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기업의 증가 등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기업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
-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은 대내외적 리스크를 감소하고 평판 제고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

□ 주요 내용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국내 이행지침 제시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국내 공감대 형성
 -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구조 형성 (토론회 등)
 - 기업과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논문 공모, 우수사례발굴·시상 등)
- 주요기업과 MOU 체결을 통한 인권경영활동 지원
 - 각종 정보제공(해외자료 번역소개, 우수/실패사례 소개 등)
 - 인권관련 자문
 -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차별에 관한 예방 또는 구제활동 지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기업과 인권에 관한 ICC 워킹그룹 활동 적극 참여
 - 국제 기준 이행 후속조치 모니터링 및 참가
 - 기업과 인권의 국제 동향 (기업과 인권에 관한 협약 채택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내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 배경 및 추진방향

- 각종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내적 관심 증대하고 있고,
-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통합 및 활용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사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개인정보수집과 활용에 대한 정보인권 보호 요구 증가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정보인권 종합보고서 발행에 따른 이행 모니터링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기준마련 등
 -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이용에 따른 인권 침해 개선
 - 기업의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 개인 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따른 인권침해 제도 개선
 - 기지국 수사에 의한 포괄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권 침해 제도 개선
 - 범죄수사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 기준 마련
 -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제도 개선
 - RFID(전파를 이용한 정보인식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률적 기준 마련
 -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지위 인정(국제인증)을 위한 추진
- 인권친화적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 국제사회의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 이행 모니터링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기준 마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게시물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터넷 자율정책기구(정보통신사업

자)의 역할 강화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 웹사이트 이용 개선 및 인터넷 접속 차단에 따른 정보접근권 침해 개선
 -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제4장.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1. 추진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역량강화’

- 추진체계는 5대 전략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위의 역량 강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인식확산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식에 대한 사회 전반적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 국내외 협력강화,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강화는 연간업무계획 작성시 ‘일반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함

가.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

□ 배경

- UN 총회의 승인을 얻은 1992년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핵심기준은 ① 헌법 또는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② 정부로부터 자율성 ③ 구성과 구성원의 다원성, 다양성, ④ 보편적 기준에 근거한 광범위한 직무 ⑤ 충분한 조사권한 ⑥ 재정적 독립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임.
-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들로부터 간섭 또는 방해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여야함을 의미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여타 국가기관과는 다르게 입법, 사법,

행정의 어느 소속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전담의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3조는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¹⁵⁾

- 인권위의 핵심기능은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며, 인권위의 규범성은 바로 헌법의 이념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어떠한 국가권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임

□ 추진 방향

- 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조직, 인사, 예산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헌법기구화¹⁶⁾를 대비함
 - 조직구성원들이 위원회법상 명시된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노력
 - 독립성을 제한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수정, 보완 등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노력¹⁷⁾
 - 장기적으로 헌법기구화 기반마련¹⁸⁾
-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권한 및 인권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15)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275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라고 실시함

16) 헌법기구 :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멕시코, 러시아, 루마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우간다, 프랑스, 필리핀, 태국, 포르투갈, 폴란드, 피지, 헝가리 등

17) 2011. 8. 2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36) 발의(김재균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 ①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구임을 명시함 ②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③국가인권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6급이하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 함

18)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논의 현황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 방향에 관한 최종결과보고서(2009. 8. 31.)
-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2008. 7. 16. 출범, 여야 186명 참여) 자문위원(임지봉 서강대교수)의 발제(2008. 7. 22.)
-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조문화위원회의 헌법기구화 논의

- 인권의 헌법적 확장 모색
 - 헌법의 기본권 분야에 시대상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및 논리 마련

나. 국·내외 협력 강화

□ 배경

- 위원회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인권·시민 사회 단체, 전문가, 시장, 국제사회 등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위원회의 역량 및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주요 인권이슈의 흐름, 주요 기관들의 동향, 인권 정보 등을 파악하고 인권의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확장, 확인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국제기구, 외국인권기구, 국내 인권관련기관, 단체 및 필요한 경우 개인까지 아우르는 상시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의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추진 방향

- 국제기구 및 외국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 유엔/국가인권기구/국제기구(ICC, APF, ASEM 등) 및 국제시민단체(NGO)와의 교류협력 강화
 - 국제인권정책발전과정(ODA-공적개발원조 초청연수) 운영
 - 제12차 ASEM 인권세미나(2012), ICC 승인소위 정규 채심사(2013),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부의장직 수임 등 대응

- 국내 인권기구, 인권단체와의 교류 협력 확대
 -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 인권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등 협력 강화
-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의 활성화

다.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배경

- 새로운 인권개념의 등장, 신규직원의 유입¹⁹⁾, 전문분야 직원의 부서간 전보로 인한 보완, 인권수요의 대폭 증가 등 내외부 인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효과적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
- 3기 인권증진계획 기간 중 인권위원의 대다수가 교체 될 것으로 예상²⁰⁾되므로 신입 인권위원에 대한 지원 및 인권 전반에 대한 브리핑 자료 개발이 필요함

□ 추진 방향

- 구성원의 인권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조사,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 확보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교재 개발, 전문강사단 구성 등
 - 위원회 10년간의 결정사례 등 활용
 - 간부, 비간부 등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인권현장 체험을 통한 인권감수성 고양

19) 특히, 2011년 위원회의 수시직제의 반영 요구에 따라 장애차별인력, 국제인력, 교육인력 등 21명이 증원되었고, 2012년에도 정시직제 반영이 예상되는 등 많은 신규직원의 유입이 예상됨

20)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 대상(예상) : 2012년 3명, 2013년 3명, 2014년 5명

- 상시적인 직원 전문성 교육 지속 및 체계 보완 등
- 업무효율화 정착을 위한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
 -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절차 프로세스 구축
 - 업무추진 절차 표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 및 인력관리 강화
- 인권위원 지원체계 강화
 - 인권위원간 워크숍 정례화 계속 유지
 - 신입 인권위원 맞춤형 브리핑 자료 개발 등 체계화
 - 인권위원의 현장방문 프로그램 체계화
 - 인권위원과 사무처 직원 간 소통기회 마련 및 지원

2. 추진 절차

확정된 인권증진 3개년 계획을 계획된 기간 안에 수행할 구체적인 실행체계 및 절차 등이 필요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함

가. 연간 업무계획의 수립

- 인권증진계획에 따라 매년도 말에 다음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전원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확정함

나. 부서별 업무계획의 수립

- 연간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누락됨이 없이 부서별 업무계획을 수립함

다. 관리과제 및 일반과제의 선정

- 부서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제시된 성과목표별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인권증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업무 및 인권위 역량강화 업무를 대상으로 일반과제를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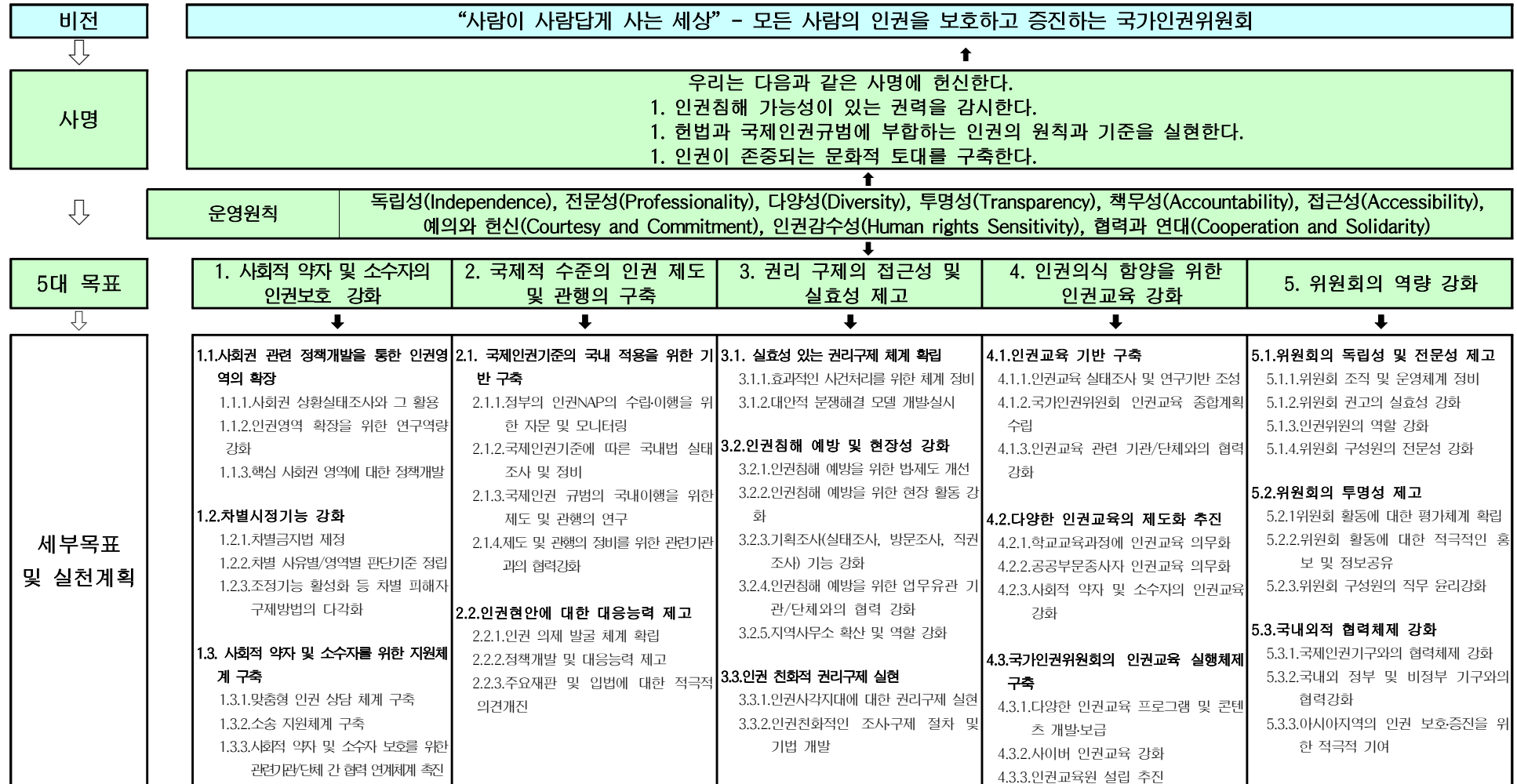
라. 조직성과평가와 연계

- 관리과제, 일반과제 또는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과제 등을 대상으로 부서별 조직의 성과를 평가함

인권증진계획추진단 명단

구분	성명	경력
단장	김영혜	상임위원
인권위원 (2)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문위원 (6)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인권안전센터 팀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병열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실무 추진단 (11)	안석모 (팀장)	정책교육국장
	유인덕	인권정책과장
	권혁장	대구인권사무소장
	안성울	법제개선팀장
	정연결	국제인권팀장
	이발래	인권정책과
	김성욱	교육운영팀장
	박광우	홍보협력과
	박성남	이주인권팀장
	장영아	여성인권팀장
	조형석	장애정책팀장
간사 (2)	김용국	기획재정담당관
	김향규	기획총괄팀장

□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 체계도



□ 제2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체계도

- 비전(vision)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사명(Mission)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전략목표

전략 목표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II. 아동 노인 인권 향상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V.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성과 목표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 사형제 폐지 입법화	2-1. 학생 인권 개선 체벌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사회권 지표 개발(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토대 구축)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인권 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5-1. 차별금지법 제정(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1-2. 표현의 자유 보장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2-2.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제 개선	4-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5-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사회적 약자 고용차별 시정 방안
	1-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1-3.(변경)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3-3. 비정규직 인권 보호 3-3.(변경)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	4-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5-3. 장애인차별 개선
	공공영역에서의 특정 종교행위 강요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 마련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 방안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촉진
	1-4. 정보인권 증진 개인정보 보호 방안	2-4. 노인 인권보호 노인보호시설 수용인 인권 개선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 권리 보장	5-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5-5. 여성 인권 보호
					여성인권 사각지대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북한 주민(북한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 ○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 검토 ○ 새터민 인권 증진 방안 모색 ○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기획사업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①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②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③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